



한의학의 미래, 의료의 미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수신 분회장

(경유) (사무국장)

제목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 관련 회원 유의사항 안내 요청

1.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25-06-0083 (2025.06.12.)
3.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 관련 회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 분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률적인 청약 처방 지양' 관련 회원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청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하여야 하며, 처방 시 '청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 종류' 등의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청약은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일률적인 처방은 지양합니다.
- (약재 구성 및 용량)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에 따라 가급적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고, 동일한 처방명(ex 당귀수산)이라 하더라도 약재의 용량 가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방
- (진료기록) 진료기록부에 청약 관련 변증, 처방사유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첨부 : 관련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국장 윤상환

처장 김태준

협조

서한의 - 제 108 호 (2025.06.13.)

우)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 / 홈페이지 : <https://www.skma.or.kr>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 (대)02-960-0811 / 팩스 02-6944-8075 / E-mail : [skma@skma.or.kr](mailto:skma@skma.or.kr)

□ 첨부

##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 관련 회원 유의사항 안내

(중앙회 보험정책국, '25.06.12.)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보험정책국(☎ 02-2657-5036, 5077, 5016)

- 아 래 -

### ■ '일률적인 청약 처방' 지양

□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청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청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2. 청약처방 시 청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바-1 한방 청약 '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 청약 처방내용: 청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청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청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청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 한방 청약(1첩당)
  - 주: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 □ 심평원 심사 사례

### <사례 1>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상태(변증 포함) 및 처방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4종의 탕약을 일률적으로 조제·보관하였다가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조제 및 적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한방 첩약과 첩약 탕전료에 대한 진료수가 불인정

### <사례 2>

진료기록부상 변증을 포함한 진료기록이 획일적인 점, 첩약 처방내역 및 처방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동일 용량의 동일 약재로 구성된 당귀수산과 체질별 통증처방 3종 중 선택하여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조제 및 적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한방 첩약과 첩약 탕전료에 대한 진료수가 불인정

### <사례 3>

진료기록부상 변증 및 첩약 처방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개별 처방전이 있으나 처방명 및 처방내역이 전건 동일한 점, 동일 용량의 동일 약재로 구성된 작약감초탕을 일괄조제 후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조제 및 적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한방 첩약과 첩약 탕전료에 대한 진료수가 불인정

## □ 회원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하여야 하며, 처방 시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제 종류’ 등의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첩약은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일률적인 처방은 지양합니다.
  - (약제 구성 및 용량)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에 따라 가급적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고, 동일한 처방명(ex 당귀수산)이라 하더라도 약제의 용량 가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방
  - (진료기록) 진료기록부에 첩약 관련 변증, 처방사유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